

입 문 강 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I

1. 법률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활관계 : 규범

인간관계 : 도덕 - 강제력 X

법률관계 : 법 - 강제력 O → 권리의무관계

○ 법의 분류



○ 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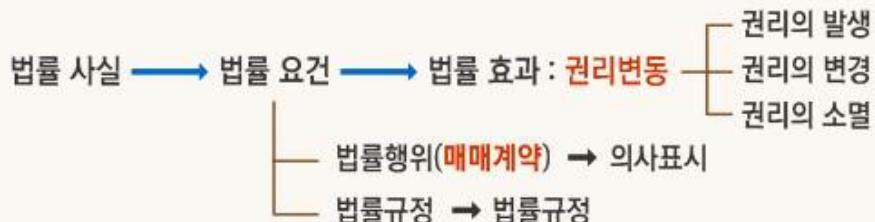
조문 : ~하면 ~하다. 그러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효과

본문(원칙)

단서(예외)

○ 민법의 체계



○ 조문과 판례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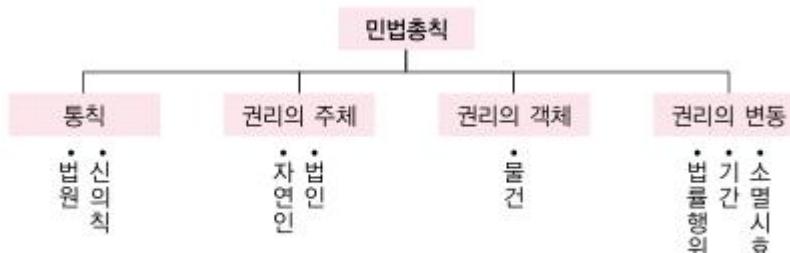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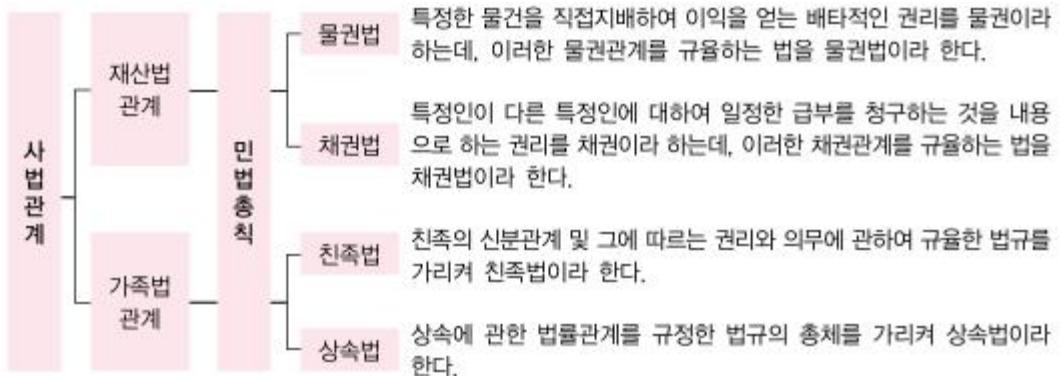
추상적 조문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판례

이러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긍정), 소극(=부정)

Keyword

결 론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입문강의자료



※ 민법의 기초 용어

1. 유추와 준용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방법이다.

(1) 유추해석은 그 사안과 관련된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 그와 가장 유사한 민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준용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민법 조문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의 조문에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0조 [준용규정]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상린관계)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2. 선의와 악의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3. 고의, 과실(귀책사유)

(1)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마땅히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았거나' 는 그 사정을 안 악의인 때이고, '알 수 있었을 때' 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사정을 모른 선의이지만 과실로 모른 경우이다.

4. 추정과 간주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법규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치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간주조항을 ‘~으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제3자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나,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 것을 말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조문의 형식

1. 요건과 효과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칙(본문)과 예외(단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